

예 산 총 칙

2008년도 [본예산]

* 제1조 : 200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 차입 한도액
총 계	974,219,717	29,226,591
일반회계	664,088,813	19,922,664
특별회계	310,130,904	9,303,927
소 계	177,117,126	5,313,514
공유재산특별회계	7,680,514	230,415
주택사업특별회계	35,850	1,076
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	4,117,570	123,527
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	1,115,000	33,450
장기미집행특별회계	1,556,535	46,696
도시개발특별회계	14,001,600	420,048
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	3,000,000	90,000
교통사업특별회계	24,756,057	742,682
도시철도특별회계	120,854,000	3,625,620
소 계	133,013,778	3,990,413
공기업		
상수도사업특별회계	53,692,162	1,610,765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9,321,616	2,379,648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‘세입·세출예산’ 과 같다.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* 제3조 : 200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‘채무부담행위조서’ 와 같다.

* 제4조 :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‘계속비조서’ 와 같다.

* 제5조 :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‘명시이월사업조서’ 와 같다.

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5,241,522천원으로 한다.

* 제7조 : 200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* 제8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